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14. 10. 6.

책임자 : 반부패부장 직무대리 윤갑근, 형사부장 조은석
전화번호 : 02-535-9388(반부패부)/5331(형사부)

제 목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사고원인·구조과정·실소유주 및 해운비리·각종 의혹-

■ 금일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구조 관련 위법행위로 기소하면서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경과를 설명드림

■ 검찰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54명을 구속하였음

※ 분야별 수사현황은 별첨1~5「검찰 수사현황 개요」등 참조

■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및 그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 세월호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 이는 기소 이후 제출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도 수사결과와 동일한 과정에 의한 침몰로 파악되었으며,

-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 관련 책임자 총 113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아울러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운영 등에 관여하였고, 무리한 증톤으로 인한 복원성 훼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음

■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결과,

- 진도VTS 관제 담당자들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기소하였으며,

-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고,

-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이어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 해양경찰청 차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음

■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배임 범행에 가담한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측근 등 총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하였음

-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유섬나·김필배·김혜경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고, 현재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재판 중에 있으며,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에 있음

■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하였음

■ 아울러, 전국 11개청에서 선박 수입 과정, 선박 검사 과정, 운항 관련 면허 취득 과정, 선박 안전점검 과정, 선박 운항 과정, 관련 기관 유착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여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과 한국선급 前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건하고, 88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향후 검찰은 관련 사건 공판과 유병언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임

Ⅰ 개요

1.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 2014. 4. 15. 21: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를 향해 운항하던 세월호가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선체가 급격히 좌현으로 전도되어 이동이 정지되고 같은 날 10:17경 전복되어 침몰되는 사고 발생

○ 단원고 학생 245명을 포함하여 승객 등 294명 사망, 단원고 학생 5명 등 10명이 실종 상태

2. 검찰수사 전개과정

○ 과적 등 운항상의 직접 과실, 구조과정에서의 과실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감독기관의 비리,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가 세월호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었음

○ 이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위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음

- 사고발생 직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여 세월호 침몰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을 수사
- 4. 20. 인천지검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의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 4. 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등의 해운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11개청에서 해운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
- 5. 29. 광주지검에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3. 검찰수사 진행상황

○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 기관·분야 및 공직자 비리 전반에 걸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음

○ 수사결과, 현재까지 총 399명을 입건하여 그 중 154명을 구속

-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는 비리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113명 입건, 61명 구속
-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진도VTS 센터장,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총 17명 입건, 5명 구속
- 세월호 관련사건 외에도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69명 입건, 88명 구속

○ 범죄수익 동결 및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 유병언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빼내간 피해재산을 법인에 회복시킴으로써 국가의 조세와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1,157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 추징보전 조치로 신속하게 동결
- 국가의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해 유병언의 은닉재산 864억원을 포함한 1,222억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 조치 병행

Ⅱ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수사진행 경과

○ 4. 16.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 구성·설치, 4. 17.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확대·개편

※ 사고발생 직후 '변사체 신속 검시·인도 계획'을 수립, 목포지청 형사1부장 검사를 진도 팽목항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목포지청 검사 2명 및 수사관 2명이 진도 팽목항 현장에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신속히 검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희생자 DNA 확인 즉시 희생자를 가족에게 인도

○ 사고원인에 대한 전문적·과학적 정밀감정을 위하여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11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실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에 시뮬레이션 실시를 의뢰하여 그 회신결과를 수사·공판에 반영

○ 사고발생 다음날(4. 17.) 청해진 해운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3일째(4. 18.) 선장 등 3명 구속을 시작으로 4. 18.부터 4. 26. 사이에 선박직 15명 전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책임자 총 38명을 입건하고 32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 상세내용은 별첨2 '사고원인 관련 구속기소 현황' 참조

2. 주요 수사 결과

가. 세월호 침몰 원인 개요

○ 세월호는 ① '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증축에 따른 총톤수의 증가(239톤)와 좌우 불균형, ②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③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 ④ 관계법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컨테이너를 부실 고박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⑤ 사고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운항상 과실이 더하여 침몰에 이르게 됨

○ 위와 같은 세월호 침몰의 직접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청해진해운 자금 착복과 전횡으로 청해진해운의 재무 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고 과적을 자행함은 물론, 선박관리·직원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부실해 졌던 것에 기인함

- 매출 증대를 위해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상시 과적 상태로 운행한 단계에서 사고 위험이 이미 상당부분 존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장 등의 운항상 과실이 기폭제가 되어 침몰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것임

  ※ 유병언과 그 일가가 고문료, 상표권료 등 각종 명목으로 2005년부터 착복한 청해진해운의 자금이 약 56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청해진해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과적을 상시적으로 자행

나. 세월호 사고 시뮬레이션 등 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규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고 원인 분석 결과

- 시뮬레이션 결과, 복원성이 약화된 선박이 과도한 조타로 인하여 횡경사가 크게 발생하였고, 횡경사와 선회 원심력으로 인해 일부 화물이 미끄러지며 이동하면서 선박의 경사를 더욱 심화

  ※ 화물을 5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마찰계수와 고박효과를 고려한 유효마찰계수를 적용하여, 선박의 경사에 의한 화물의 미끄러짐과 선회 원심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 대각도 선회에 의한 횡경사와 화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약 30도의 횡경사가 발생한 후, 화물적재구역(D-Deck)의 측면 문과 선미 램프(차량 출입문)를 통하여 초기 침수가 발생

- 이후 지속적인 침수 진행으로 선박 침몰

○ '전문가 자문단' 사고 원인 분석 결과

- 세월호는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조타미숙에 의한 대각도 횡경사 이후 ▲고박이 불량한 적재화물의 이동으로 약 30도까지 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성이 더욱 악화되어 직립하지 못하였고,

- 이후 수면 부근 개구부(開口部)로 침수가 개시되어 횡경사가 계속 악화된 결과 결국 전복, 침몰

※ 전문가 자문단에서 기기 결함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주기관을 비롯한 기관실 각종 기기(주발전기, 비상발전기, 배터리 등)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조타장치도 사고 전까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시뮬레이션 결과**

- 한국선급 승인 적재조건 준수시 모든 조타의 경우 횡경사가 10도 내외로 발생하나, 사고 당시 세월호의 평형수 및 화물 적재량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운항할 경우 급선회시 횡경사가 최대 30도로 발생 가능한 사실 확인
- 고박된 화물의 이동이 없는 경우 선박 전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고박 불량으로 화물이 이동할 경우 선박의 침수가 발생할 정도의 횡경사가 발생하고, 그 결과 침수에 따른 선박 전복이 발생 가능한 사실 확인

다.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규명

○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자료,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의 운영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 착수

- 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 및 관련자들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회계자료,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사고관련자들 통화내역·이메일 확보 및 분석, 그룹 계열사 주요 임원(업무지도팀, 사장단회의 멤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주요 전·현직 임직원, 그 외 신엄마 등 전반적 조사

○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운영·매각 등에 관여하였고,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훼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고받는 등으로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

※ 세월호 출항 이후 사고 발생시까지 과적을 통해 총 29억6,000만원 상당의 초과 수입을 얻음

○ 유병언의 과적 운항 묵인 내지 지시하는 등 과실은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과적·부실고박 과실, 선장 등의 운항상 과실 등과 중첩하여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에 해당하므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이 성립함

○ 다만,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음

※ 관련 수사자료는 유병언 일가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소송자료로 활용 예정

라. 세월호 침몰 및 구호의무 위반 책임

○ 세월호를 침몰에 이르게 하고, 승객들을 구호하지 않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및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탈출한 선원 15명 전원 구속 기소

○ 과적 등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5명 구속)과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및 운항관리실 관계자 4명(전원 구속)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

마. 세월호 안전 관리·감독상의 부실 책임

○ 증선 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4명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인천해양항만청 前 선원해사안전과장 등 4명을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 (구속 4명, 불구속 4명)

※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추가 입건

○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정비한 업체 대표 등 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구속 3명, 불구속 1명)

○ 경사시험 등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 1명을 구속기소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방송 화면에 의하면 선체 오른쪽 바닥에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보이는데, 세월호가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은 아닌지**

- 사고 당시 전남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위 흔적은 선저 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가자문단 의견도 동일하며, 세월호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아니함

- 그 밖에 세월호의 사고 당시 동영상 및 각종 사진 등을 살펴보아도 세월호 선체에 다른 물체와 충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세월호는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의 충돌로 인하여 침몰한 것이 아님

○ **7. 25. 세월호 노트북 복구 자료의「국정원 지적사항」파일에 100여건에 이르는 작업내용과 작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자판기 설치', '직원의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제출'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으로 보아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이거나 증·개축 등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 노트북에서 복원된「국정원 지적사항」파일에 2013. 2. 26.~27. 국정원의 사전예비점검시 지적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 ①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세월호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 ② 세월호 이외에 씨스타크루즈호(15,089톤) 등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 및 ③「국정원 지적사항」파일의 99개 항목 중 실제 국정원이 지적한 항목은 9개에 불과하고, 그 또한 세월호 보안측정에 대비한 선박의 테러·피랍 관련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임

○ **세월호 침몰 당시 123 구조함정은 가장 먼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구조하였는데, 그는 탑승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길래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했는지, 세월호 침몰이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맨 등의 폭파에 의한 것은 아닌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인 A(62세)로 확인되었음

※ A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시 신고 있던 신발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이 동일함을 확인

- 세월호의 선체가 폭발한 흔적이나 증거도 일체 없음

○ **8. 22.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DVR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한 결과, 재생된 세월호 CCTV 영상은 4. 16. 08:30:59에 꺼지는데 반하여 CCTV를 제어하는 DVR이 08:33:38까지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로그파일('20140416.alg'파일)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이 3분 차이가 나는 것은 CCTV가 조작되었기 때문 아닌지**

- 대검DFC 분석결과 및 전문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서 영상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파일이 손상되어 복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CCTV가 조작되었거나 누군가 고의로 종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함

○ **세월호 CCTV 영상이 꺼지는 시각이 세월호 사고발생 시각인 08:48경 보다 18분가량 빠른 점에 비추어, 누군가 사고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닌지**

- 세월호 CCTV 영상에서 표시된 세월호의 인천항 출항 시각은 4. 15. 20:42:10임에 반하여, 인천항 CCTV에 표시된 인천항 출항 시각은 4. 15. 20:59:42로 확인되는바, 세월호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8분가량 빠른 것일 뿐, 사고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님

Ⅲ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수사진행 경과

○ 5. 29. 광주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로 세월호 구조 관련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사고 후 구조과정의 문제점 전반에 관하여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 진도VTS에서 야간 시간대에 관제를 부실하게 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센터장 등 13명 관제사 전원 입건하여 7. 21. 기소 (구속 5명, 불구속 8명)

○ 초기 구조현장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 불이행·상급지휘관서의 퇴선 유도 지시 불이행 등 미흡한 선내승객 구호조치로 승객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허위 조작한 혐의가 확인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10. 6. 불구속 기소

○ 언딘에 해경 상황실 보고서를 유출하고,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본청 수색구조과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10. 6. 불구속 기소

○ 또한, 계약체결 당사자인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하여 사고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해양경찰청 차장과 수색구조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

○ 6. 5.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하고, 7. 7. 언딘 본사, 대표자 주거지 등 11개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7. 21. 해양구조협회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컴퓨터 70대 총 68,000여개 파일 압수, 해경 TRS 무선교신기록, 상황실 경비전화, 내부 메신저 대화기록, 내부 작성 보고서, 진도VTS 관제석 복무감시용 CCTV 압수·복원, 언딘 의혹 관련 78개 계좌 추적

※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관련자료 일체 확보·분석

○ 해경, 언딘 관계자 등 28명에 대한 통신영장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하였고, 해경 95명을 비롯하여 세월호 승무원, 구조 참여 어민, 언딘 관계자 등 총 172명(연인원 450명) 소환 조사

※ 군검찰에 의뢰하여 군 관련 필요부분 조사 및 자료 확보

○ 형사책임 추궁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수사하였음

※ 상세내용은 별첨3 '세월호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기소 현황' 등 참조

2. 주요 수사 결과

가. 진도VTS 관제담당자의 부실 관제

○ 진도VTS의 부실 관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요원 13명 전원을 입건하여, 7. 21. 기소 (구속 5명, 불구속 8명)

○ 범죄사실 요지

- 2014. 3. 15.~4. 16.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음 【직무유기】

※ 사고 당일 06:00~07:30 B(C팀원), 07:30~08:15 C(C팀장), 08:15~08:50 B(C팀원), 08:50~09:00 D(A팀원)이 단독으로 관제하였고, 사고현장을 관제하는 2섹터 담당 관제사 등 다른 관제사들은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

- 2014. 3. 28.~4. 16.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공문서인 교신일지 허위 작성·비치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14. 4. 19.경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5. 22.경 녹화 파일을 삭제 【공용물건손상·공용전자기록등손상】

※ 수사결과 관제업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제실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영상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진도VTS 관제사 전원이 대책을 상의한 사실, 감사원 감사·검찰 조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로 진상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정황 확인됨

※ 대검DFC에서 삭제파일을 복구한 결과, 야간에 혼자 근무하던 1섹터 관제요원 조차 장시간 휴대전화사용・수면・무단 이석 등 관제 업무를 불량하게 수행한 사실도 확인됨

나.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정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결과, 미흡한 선내승객 구호조치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지휘관으로서의 현장 판단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례가 없어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기소하였음

○ **범죄사실 요지**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지휘관(OSC)으로서 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내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123정 승조원 및 해경 헬기의 구조 활동을 지휘하면서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유도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퇴선 유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병언,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선장・선원 등의 고의・과실과 중첩・경합하여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함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123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내 대공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판단 하에 상급지휘관으로서의 명시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2014. 5.경 세월호 침몰사고일인 4월 16일자 함정일지의 일부를 떼어낸 다음, 마치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하고 123정 승조원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하여 첨부하는 등 조작함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

※ 감사원 조사·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123정장과 승조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됨

다. 해경 차장 등의 '언딘' 특혜 제공 관련

○ '언딘'이 구난(선체인양)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해경이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최상환, 수색구조과장(총경) E,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경감 F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해경 차장을 비롯한 일부 해경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일부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직후 계약체결 당사자인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하여 사고현장에 동원 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됨

○ **범죄사실 요지**

- 최상환, E, G는 공모하여, 언딘 대표의 부탁에 따라 당시 건조 중인 선박이어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일주일 안에 사고현장에 동원시키기 위해, 2014. 4. 21. 조선소에 리베로호를 신속히 출항시키도록 명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선박안전법위반 교사】

- E, G는 공모하여, 2014. 4. 21. 목포해양경찰서 선박구난업무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난명령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구난명령을 조선소에 내리도록 압박·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F는 2013. 7. 12. 공무상 기밀사항이 기재된 상황실 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언딘 이사에게 송부하고, 2014. 4. 16.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계약담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 행사 등【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먼저 도착한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아닌지**

- 해경·해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경은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해군도 자체 판단 하에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일 뿐,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수사들을 구조활동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

- 사고 당시 세월호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민간잠수사 H가 언딘의 협력업체 관계자임에도 다른 민간잠수사들과 마찬가지로 투입하지 않은 점,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강조류 및 해수 선체유입으로 인해 해경과 해군조차도 제대로 된 잠수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수사의 투입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문 구조인력인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이 골든타임을 놓친 한참 뒤에야 뒤늦게 도착한 과정상 문제는 없는지**

- 사고 사실 파악 직후 출동 준비를 하였으나 이동 헬기의 부족, 준비 및 이동에 필요한 시간 등 사정에 기인하여 도착이 늦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지휘가 중요한데도 즉시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3009함에 그대로 승선한 채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 지휘 소홀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목포해경서장이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즉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유선으로 현장지휘관인 123정장에게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였고 123정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목포해경서장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움

○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119 첫 신고학생과 통화시 위도·경도를 물어보고, 119 신고를 진도VTS에 문서로 통보하느라 10분 허비하고,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안전여부 및 선내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119로부터 3자 통화를 통해 연결된 최초 신고자에게 위·경도를 묻느라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 신고자와 통화 중 AIS를 통해 세월호의 위치를 찾아 서해청 등에 유선 보고를 하고, 09:03경 TRS를 이용하여 경비정 등 구조세력에게 세월호 조난 사실을 알리고 출동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해군의 VHF 청취록에는 있으나 해경이 제출한 VHF 교신록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해경의 늑장 대응을 은폐하려고 고의로 교신내용을 삭제한 것은 아닌지**

- VHF의 도달 거리는 통상 25~30마일이며, 목포305함의 방송 당시 진도 VTS가 305함과 8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도VTS의 VHF 교신기에는 위 방송 내용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조작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함

Ⅳ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책임재산 환수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 비리 수사

○ 수사 착수경위

- 세월호 침몰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경영상 비리로 인한 부실운영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 비리 수사에 착수하였음

○ 수사 진행상황

-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 유병언 일가 5명, ㈜다판다 대표이사 등 계열사 임원 9명 구속 기소

  ※ 상세내용은 별첨4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 비리 구속기소 현황' 참조

-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유섬나·김필배·김혜경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으며,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재판 중에 있고,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

○ 범행수법

- ① 상표권료, ② 고문료, ③ 경영자문료 또는 컨설팅비, ④ 사진대금 또는 사진사업 출자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 수사결과, 유병언 회장이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등지에서 개최한 사진전시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자금을 사진대금으로 빼돌리는 등 유병언 일가가 상표권, 고문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책임재산 환수

○ 재산환수 특별반 구성

-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환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검사 4명과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으로 특별반을 구성·운영

○ **제1차 추징보전 명령**

- 5. 27. 161억원 상당의 유병언 일가 부동산, 차량, 예금 및 21개 주요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 635,080주(평가액 234억원 상당)에 대해 제1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2차 추징보전 명령**

- 6. 16. 유병언 차명 소유 안성 소재 아파트 224세대, 유대균 실명 보유 부동산, 유대균 차명 소유 자동차,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 합계 213억원 상당에 대해 제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3차 추징보전 명령**

- 7. 1. 유병언 차명 소유 역삼동 상가 및 농가주택, 유혁기 실명 소유 아파트, 고가의 사진기 등 합계 102억원 상당에 대해 제3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4차 추징보전 명령**

- 7. 17. 유병언 차명 소유 영농조합법인 6개, 계열사 2개, 측근 20명의 토지 및 건물, 비상장주식 등 합계 344억원 상당에 대해 제4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5차 추징보전 명령**

- 7. 31. 유병언이 영농조합법인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토지·건물 86억원 상당, 김혜경과 그 가족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104억원 상당에 대해 제5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190억원 상당 재산 중의 6/11에 대한 상속지분이 추징보전 대상으로 인용

○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친 추징보전 명령으로 동결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합계 1,157억여원으로 이는 유병언 일가의 회사 자금 횡령·배임 금액 1,334억원의 약 86%에 해당함

※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는 법무부 및 서울고검 주도로 진행 중이며 (예상 구상금 채권 4,031억원), 가압류 대상재산의 가액은 약 1,222억원(유병언 실·차명 재산 864억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선원 등 358억원)임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유병언의 사돈인 I(의료재단과 학교법인의 이사장)가 유병언의 지시로 'ㄱ'골프숍을 운영하는 J로부터 골프채 50억원 어치를 구입하여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 I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로비와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I는 "J 운영 골프숍에서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
- 골프숍 거래장부와 매출장 등 확인 결과, I가 구입한 골프 용품은 50억원 상당이 아닌 4년 동안 총 3,000만원 상당에 불과
- 구입한 골프 용품 사용처 확인 결과, I 본인과 부인이 사용 중이거나, 나머지는 I가 운영하는 의료재단 직원 3명에게 선물로 사용하는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교부된 것은 없었음

※ 그 밖에 유병언 측에서 'ㄴ'골프수입업체로부터 골프채 50억원을 구입하였다는 의혹도 있으나 'ㄴ'골프업체 관계자 진술 및 거래내역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유병언이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와 같이 중요한 구원파 내부자료를 숨겨 두었다는데 사실인지**

- 유병언이 도피용으로 준비한 가방(종이박스 포함)은 총 13개 발견되었는데, 그 중 일부 언론에서 ①번 가방에 유병언의 로비리스트 등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확인 결과 그곳에는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 유병언이 평소 애장하던 해외 고가 명품들이 들어 있었을 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는 발견되지 않았음

※ 그 외 나머지 가방에서도 로비 리스트 등 중요 서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가방을 쌌던 K도 로비리스트는 없었다고 진술

Ⅴ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수사

1. 수사 진행경과

○ 4. 20. 인천지검에 한국해운조합비리 등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4. 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 5. 2. 인천·부산지검 이외에 전국 9개 검찰청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관하여 수사 확대

※ 상세내용은 별첨5 '해운비리 구속기소 현황' 참조

○ 수사결과 '세월호 침몰사고'는 유병언 일가의 회사 경영비리, 증축·과적 등 운항상의 직접적 문제,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이외에도 감독기관의 비리와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선박 건조·도입 단계**」에서는 ① 불법 대출 ② 해운·조선업체 리베이트 ③ 불법 증선인가 등의 문제가 확인

「**선박 검사 단계**」에서는 ① 허위·부실 선박검사 ②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③ 우수정비사업장 비리 ④ 감독기관·검사기관·안전관리 대행업체·선사 간 유착 비리 등의 문제가 확인

「**안전점검·관제 단계**」에서는 ① 허위·부실 안전점검 ②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③ 정원초과·과적·부실고박 등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 ④ 선박검사 및 점검 미이행 ⑤ 해상교통 부실관제 등의 문제가 확인

「**선사·안전업무 수탁기관 운영 단계**」에서는 ①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해운조합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② 선사 등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의 문제가 확인

2. 선박 관련 단계별 비리 수사

○ 선박 수입 과정

-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활용하여 59억원 상당을 편취한 선박회사 대표 등 선박 담보 사기 대출 사범 7명 구속 (부산지검, 포항지청)

○ **선박 검사 과정**

- 대여받은 해기사 자격증으로 해수부 장관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받고, 팽창식 구명뗏목 등에 대한 허위의 점검결과표를 작성하는 등 해수부장관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업체 대표 2명 구속 (인천지검)

- 선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의 임시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한 한국선급 지부장 구속 (창원지검)

- 건조 중인 선박 등록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수수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및 금품공여 업체대표 등 구속 (창원지검)

○ **운항 관련 면허취득 과정**

- 인천·제주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3,500만원 수수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등 인천항만청 관계자 2명 구속 (검·경 합수부)

- 인천·제주 복선면허 신청시 선박매매계약서의 톤수를 축소기재하여 증선 인가를 받은 청해진해운 前 상무 등 임직원 3명 기소 (검·경 합수부)

- 선박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부당 면허 취득 사범 15명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 **선박 안전점검 과정**

- 상습적으로 과적·정원초과 등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수백회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운항관리자들 19명 구속 (인천지검, 제주지검, 군산지청, 통영지청, 포항지청)

-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장비결함이 있는 선박에 운항정지명령을 한 부하경찰관에게 정지명령을 철회토록 한 해경 간부 구속 (인천지검)

○ **선박 운항 과정**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석유류인수증 발급하여 항만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유류보조금을 편취한 해운사 대표 등 5명 구속 (순천지청)

- 평택항 민자컨테이너 운영수입을 조작하여 정부보조금 65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평택지청)

-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3,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통영요트협회 부회장 구속 (창원지검)

3. 관련기관 유착 등 비리 수사

○ 선박톤수 측정과 관련된 편의 제공 목적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항만청 소속 6급 공무원 및 선박설계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부산지검)

○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무마 대가로 감사 담당 공무원을 퇴직 후 연봉 1억원의 한국선급 감사팀장으로 고용한 한국선급 前 회장 등 한국선급 임직원 4명 구속 (부산지검)

○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관련 손해사정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수수한 사업본부장 및 손해사정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인천지검)

○ 해운조합 자금 1억 6,000만원을 횡령한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선주들의 안전운항 위반 사실을 묵인하도록 한 한국해운조합의 안전본부장 등 해운조합 간부 7명 구속 (인천지검)

Ⅵ 향후 계획

1. 공판 활동에 만전 및 남은 의혹 계속 수사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과정 등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음

2. 해외 체류 중인 비리 관련자 검거·책임재산 확보에 주력

○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청해진해운 실사주 일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해외에서의 검거 및 범죄인 인도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한 국제 협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음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 공조를 통해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차명 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하여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에 주력하겠음

3. 국민 안전 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 해운업계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음

○ 수사결과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